

#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韓錦順\*\*

- |                                   |  |
|-----------------------------------|--|
| I. 머리말                            | IV.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과<br>戊戌式(1898년)의 남정 등재 현황 |
| II. 하원리 호적중초의 특징                  | V. 맺음말   |
| III. 하원리 호적중초의 이정과 감고 본문<br>등재 현황 |  |

## • 국문초록

제주도 호적 작성의 원칙은 1872년 도두리 「籍草紙本錢設置節目」을 근거로 ‘無一漏戶 無一漏名’의 철저한 호구조사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호적작성에서도 漏戶와 漏口가 빈번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이 적용되는 전후 식년의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 / 光緒二十年)과 戊戌式(1898년 / 光武二年)을 표본으로 하여 누호와 누구 현상을 살폈다. 우선 호적 작성 책임자인 이정과 감고의 호적 등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이정은 40%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고 감고는 36%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다. 이 정도의 빈도는 의도적이고 관례적으로 누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겠다. 또한 남정의 실명을 확인하여 누락과 등재 현상을 살폈다. 甲午式(1894년)에서는 전체 남정의 20%인 40명이 누락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戊戌式(1898년)에 신등제되는 남자는 전체 남정의 28%인 63명이나 되었다. 두 개 식년 호적중초 사이에서만 총 103명의 이탈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 이 논문은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주대 사학과 강사.

이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개 식년 사이에 남정의 20% 누락과 28%의 신등재 현상이 드러난 이상 제주도의 호적작성 원칙이 ‘無一漏戶 無一漏名’을 지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 주제어

無一漏戶 無一漏名, 漏戶, 漏口, 하원리 호적중초,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 I. 머리말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은 嚴法을 적용하였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1872년 도두리 「籍草紙本錢設置節目」의 “호적의 법식을 보면 他州와는 구별됨이 있다. 매 식년에 ‘無一漏戶 無一漏名’이다.”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역의 부담이 과중했던 제주지역의 경우, 철저한 호구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피역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하원리 호적중초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인명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 결과 조선시대 호적작성의 일반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에서도 寬法을 적용한 호적 작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정과 감고의 누락현상과 호적 간의 실제 인명의 누락현상도 포착할 수 있었다.

이같은 하원리 호적중초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인명의 등재와 누락현상을 살폈다. 이를 통해 제주도 호적중초가 ‘無一漏戶 無一漏名’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관법을 적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정과 감고의 호적중초 등재 여부는 하원리 호적중초 36권 모두를 조사하였고, 호적중초의 실제 인명의 등재 여부는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과 戊戌式(1898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도 하원리 호적중초인 1810년부터 1908년까지의 36책 전체를 대상으로 각 식년의 원호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살폈더니 甲午式(1894년)과 戊戌式(1898년) 사이에 원호의 증가가 84.4%로 호적들 간에 가장 두드러지고 인구도 7.7%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의 적용으로 호적 작성 원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호구조사세칙>으로 甲午式(1894년)에 누락되었던 인명이 戊戌式(1898년)에 대거 등재될 것으로 짐작하여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이 과연 ‘無一漏戶 無一漏名’의 원칙을 실행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1) 김동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24~25면.

조선 시대 국가의 호적 작성 원칙은 ‘無一漏戶 無一漏口’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寬法을 적용하였던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sup> 제주도 도두리 「籍草紙本錢設置節目」의 ‘無一漏戶 無一漏名’ 기록처럼 제주도에서 과연 그 원칙을 지키고 있었는지에 대해 실제 인명을 통해 등재와 누락 현상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본고는 하원리 호적중초 중 두 개의 호적중초의 실제 인명만을 고찰하였다는 점이 한계이다. 차후 다른 마을의 같은 식년 호적까지 비교 조사한다면 더욱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하원리 호적중초의 특징

### 1. 하원리 호적중초의 특징

조선시대 호적 자료로는 호구단자·준호구·통적·호적중초·호적대장 등이 있다. 호적 작성은 국가가 부세정책에 의해 필요한 만큼의 직역자 수를 각 군현에 배정하게 되면 각 마을은 배정된 수만큼 개인으로부터 호구단자를 제출 받아 이를 바탕으로 마을별로 호적중초를 작성하며 군현은 호적중초를 모아 호적대장을 만들게 된다. 제주도에 호적대장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원리 호적중초는 1810년 庚午式 호적중초부터 1908년 戊申式 호적중초까지 모두 36권이 현재 하원리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는 40권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sup>3)</sup> 다음의 표는 하원리 호적중초 목록이다. 본래의 호적명은 길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호적명’을 다음의 표와 같이 필자 임의로 제시한 번호로 칭하려 한다.

2)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 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98면.

3) <대정 9년(1920년) 庚申 8월일 傳掌記>에 의하면 40권이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대정 9년(1920년) 庚申 8월일 傳掌記」,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4면.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1> 하원리 호적증초 목록

호적명	호적 표제	연도
1권	嘉慶 十五年 正月日/ 庚午式 / 下院里/ 戶籍中草	1810년
2권	嘉慶 十八年 正月日/ 癸酉式 / 中草/ 下院	1813년
3권	嘉慶 二十一年 丙子式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16년
4권	嘉慶 二十四年 正月 己卯式 戶籍中草 / 下院里	1819년
5권	壬午式/ 道光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第一左面 第三 下院里	1822년
6권	道光 五年 乙酉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5년
7권	戊子式/ 道光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28년
	분실	1831년
	분실	1834년
8권	丁酉式/ 道光 十七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37년
9권	庚子式/ 道光 二十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0년
10권	癸卯式/ 道光 二十三年 正月日 / 下院里 戶籍中草	1843년
11권	道光 二十六年 下院里 丙午式 / 戶籍中草	1846년
12권	己酉式/ 道光 二十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下院里	1849년
13권	壬子式/ 咸豐 貳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2년
14권	乙卯式/ 咸豐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5년
15권	戊午式/ 咸豐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58년
16권	咸豐 十一年 正月日 大靜縣 辛酉式 / 戶籍中草	1861년
	분실	1864년
17권	丁卯式/ 同治 六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67년
18권	庚午式/ 同治 九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0년
19권	同治 十二年 正月日 / 大靜郡 河源里 癸酉式 戶口中草	1873년
20권	丙子式 / 光緒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6년
21권	己卯式/ 光緒 五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79년
22권	壬午式/ 光緒 八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2년
23권	乙酉式/ 光緒 十一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5년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호적 표제	연도
24권	戊子式/ 光緒 十四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888년
25권	辛卯式/ 光緒 十七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1년
26권	甲午式/ 光緒 二十年 正月日 / 大靜縣 河源里 戶籍中草	1894년
27권	戊戌式/ 光武 二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8년
28권	光武 三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899년
분실		1900년
29권	光武 五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1년
30권	光武 六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2년
31권	光武 七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3년
32권	光武 八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4년
33권	光武 九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河源里 戶籍中草	1905년
34권	丙午式/ 光武 十年 正月日 大靜郡 左面 / 戶籍中草/ 河源里	1906년
35권	丁未式/ 光武 十一年 正月日 / 大靜 左面 戶籍中草/ 河源里	1907년
36권	戊申 隆熙 二年 正月日 戶籍中草 / 河源里	1908년

1권에서 26권까지는 3년마다 작성되고 있다가 27권부터는 해마다 작성되고 있다. 조선시대 호적은 式年(子 卯 午 酉의 간지가 들어가는 해) 즉 3년마다 전국적인 호구 조사를 실시하여 군현단위로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하원리 호적중초도 이 식년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다. 총 40권이었으나 36권만 현재 전해지고 있다. 1831년, 1834년 1864년, 1900년의 호적중초가 유실되었다.

## 2. 하원리 호적중초의 원호 / 도인구

다음의 표는 하원리 호적중초 각 책의 말미에 나오는 해당 식년 호적의 作統과 原戶의 수, 都人口를 표로 만든 것이다.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2> 하원리 호적중초 연도별 작통·원호·도인구

호적명	연도	작통	원호	도인구	비고
1권	1810년	10통	50호	228명	
2권	1813년	10통	50호	273명	
3권	1816년	10통	52호	288명	
4권	1819년	10통	52호	302명	
5권	1822년	11통	55호	315명	
6권	1825년	11통	53호	337명	
7권	1828년	10통	51호	343명	
	1831년				분실
	1834년				분실
8권	1837년	11통	55호	430명	
9권	1840년	11통	54호	389명	
10권	1843년	10통	49호	387명	
11권	1846년	9통	47호	421명	
12권	1849년	10통	50호	427명	
13권	1852년	10통	48호	425명	
14권	1855년	10통	49호	434명	
15권	1858년	10통	49호	458명	
16권	1861년	10통	50호	469명	
	1864년				분실
17권	1867년	11통	53호	480명	
18권	1870년	11통	55호	495명	
19권	1873년	11통	55호	485명	
20권	1876년	11통	55호	511명	
21권	1879년	10통	54호	491명	
22권	1882년	10통	53호	483명	
23권	1885년	11통	57호	491명	
24권	1888년	12통	62호	503명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연도	작통	원호	도인구	비고
25권	1891년	11통	58호	456명	
<b>26권</b>	<b>1894년</b>	<b>13통</b>	<b>64호</b>	<b>466명</b>	
<b>27권</b>	<b>1898년</b>	<b>11통</b>	<b>118호</b>	<b>502명</b>	<b>원호의 급격한 증가</b>
28권	1899년	11통	120호	513명	
	1900년				분실
29권	1901년	12통	120호	513명	
30권	1902년	12통	120호	513명	
31권	1903년	12통	120호	513명	
32권	1904년	12통	120호	513명	
33권	1905년	12통	119호	514명	
34권	1906년	12통	120호	514명	
35권	1907년	18통	180호	519명	통수의 급격한 증가
36권	1908년	20통	196호	622명	

일별하여 보면 원호는 50호를 중심으로 소폭의 증감을 보이면서 이어져오다가 27권(1898년)에서 118호로 급격히 증가한다. 도인구는 대체적으로 서서히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36권(1908년)에서 큰 폭의 증가가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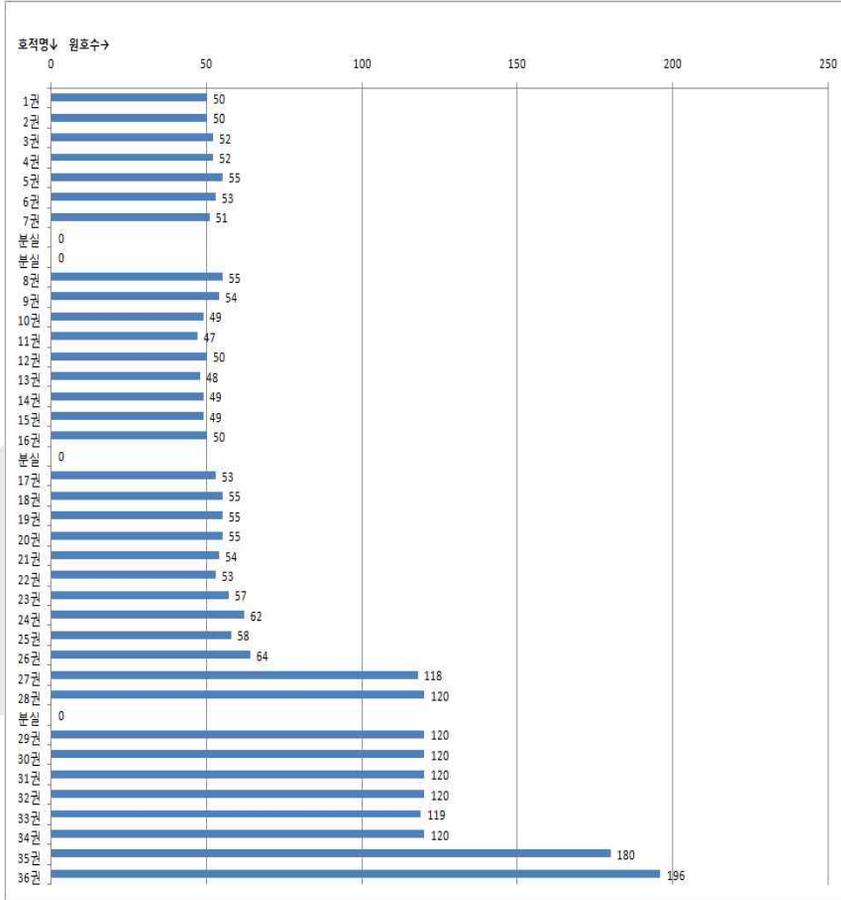
#### 1) 원호의 변화

하원리 호적중초의 원호 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하원리 호적중초 1권(1810년)의 원호 50호는 큰 변화 없이 약간의 증감을 보이면서 26권(1894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27권(1898년)에 이르러서 118호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다. 이는 호적 작성 원칙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1896년의 <호구조사세척>은 별거하고 있으면 개별호로 파악한다는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하원리 호적중초 27권의 원호가 급격히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하모리 호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4)</sup>

4) 손병규,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도표 1> 하원리 호적중초 원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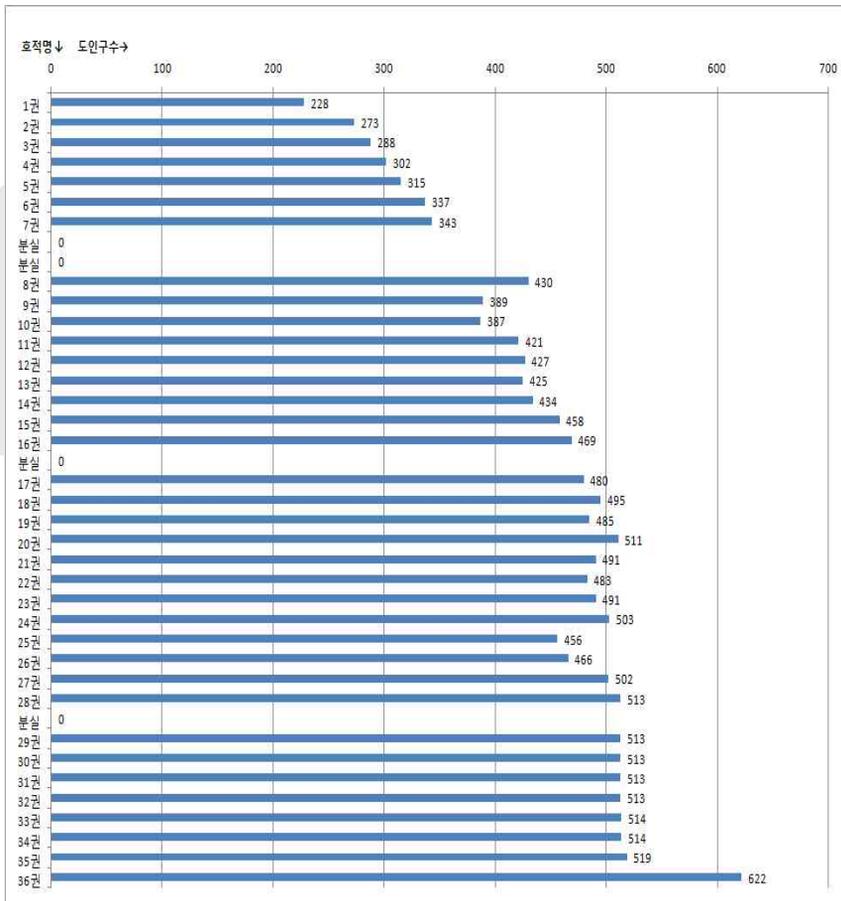
원호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은 하원리의 실제 인구나 상관없이 부세 부과 원칙에 따라 하원리에 할당된 부세의 양이 일정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2) 도인구의 변화

도인구의 경우는 원호의 증가폭만큼 큰 폭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원호

의 수는 27권에서 두 배 정도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나 인구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1896년의 <호구조사세척>의 적용으로 원호의 수는 증가하지만 인구가 원호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인구의 증가가 원호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도 하모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5)</sup>

<도표 2> 하원리 호적중초 도인구 수



5) 손병규, 위의 글.

### 3) 호당 口數의 변화

원호의 증가에도 도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호당 구수를 보면 알 수 있다. 호당 구수는 4.56명에서 시작하여 점점 증가하여 16권(1861년)에는 최고 9.38명의 호당 구수까지 올라간다. 그러다가 27권(1898년)에 이르러 원호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맞추어 호당 구수가 4.25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같은 호에 있던 9.38명의 인구가 호수가 늘어나면서 호당 구수가 줄어든 것이다.

하원리 호적중초 26권과 27권 사이에 원호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인구는 원호의 증가폭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별거하면 분호한다는 <호구조사세칙>에 따른 것으로 전체 인구는 두 배만큼 증가하지 않고 호당 구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표 3> 호당 구수

호적명	연도	작통	원호	도인구	호당 구수
1권	1810년	10통 5호	50	228	4.56
2권	1813년	10통 5호	50	273	5.46
3권	1816년	10통 7호	52	288	5.54
4권	1819년	10통 7호	52	302	5.81
5권	1822년	11통 5호	55	315	5.73
6권	1825년	11통 3호	53	337	6.36
7권	1828년	10통 6호	51	343	6.73
8권	1837년	11통 5호	55	430	7.82
9권	1840년	11통 4호	54	389	7.20
10권	1843년	10통 5호	49	387	7.90
11권	1846년	9통 7호	47	421	8.96
12권	1849년	10통 5호	50	427	8.54
13권	1852년	10통 3호	48	425	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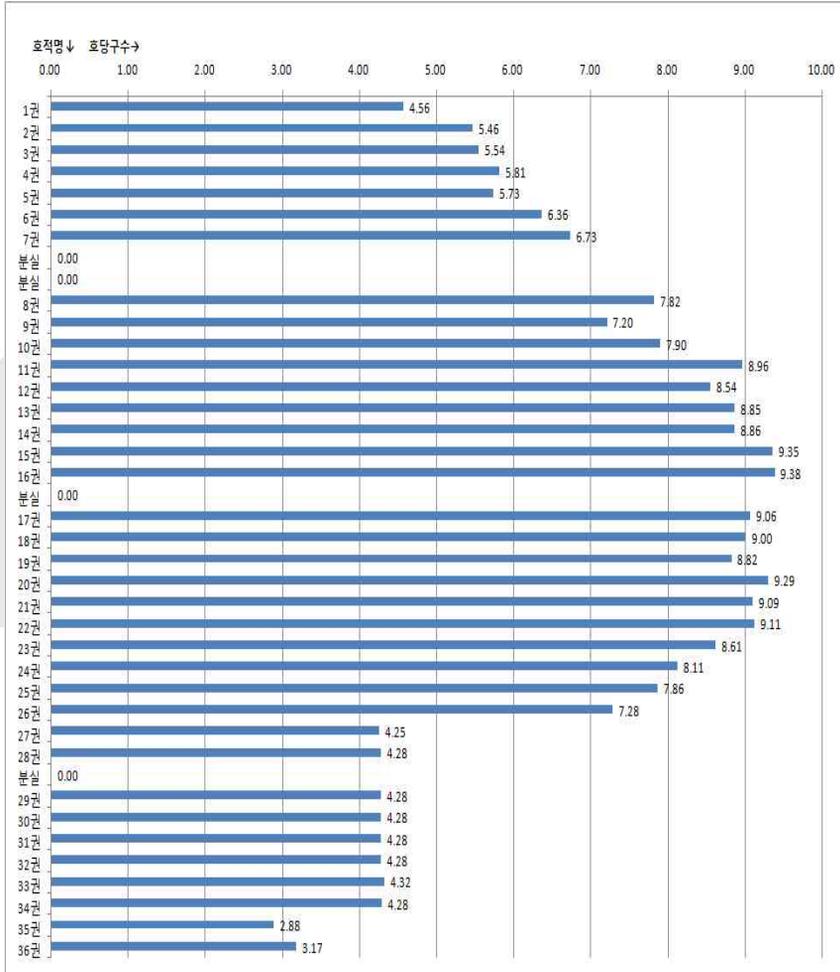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연도	작통	원호	도인구	호당 구수
14권	1855년	10통 4호	49	434	8.86
15권	1858년	10통 4호	49	458	9.35
16권	1861년	10통 5호	50	469	9.38
17권	1867년	11통 3호	53	480	9.06
18권	1870년	11통 5호	55	495	9.00
19권	1873년	11통 5호	55	485	8.82
20권	1876년	11통 5호	55	511	9.29
21권	1879년	10통 4호	54	491	9.09
22권	1882년	10통 3호	53	483	9.11
23권	1885년	11통 2호	57	491	8.61
24권	1888년	12통 2호	62	503	8.11
25권	1891년	11통 3호	58	456	7.86
26권	1894년	13통 4호	64	466	7.28
27권	1898년	11통 8호	118	502	4.25
28권	1899년	11통 8호	120	513	4.28
29권	1901년	12통 10호	120	513	4.28
30권	1902년	12통 10호	120	513	4.28
31권	1903년	12통 9호	120	513	4.28
32권	1904년	12통 10호	120	513	4.28
33권	1905년	12통 9호	119	514	4.32
34권	1906년	12통 10호	120	514	4.28
35권	1907년	18통 10호	180	519	2.88
36권	1908년	20통 6호	196	622	3.17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원호와 도인구를 통해 호당 구수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하원리 호적중초 호당 구수



### Ⅲ. 하원리 호적중초의 이정과 감고 본문 등재 현황

호적 작성 업무에 관여하는 직책은 각 리의 厘正·監考·別有司·尊位 등이 있다. 호적중초가 작성된 후에는 대정현감이 署押을 하고 각 리에 분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정·감고들은 호적중초의 내용을 살피고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것은 수정을 한 후 호적중초를 관리하는 별유사·존위 등에게 인계하였다.<sup>6)</sup> 이 절차에서 호적중초의 말미에 해당 식년 호적중초의 통계 상환 기록과 함께 이들의 手記를 남기고 있다.

하원리 호적중초 전체인 36책에서 이정과 감고의 등재 현황을 살펴보았다. 호적 작성의 책임자인 이들의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의도적인 누락의 여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정·감고·별유사·존위 중에 이정과 감고는 성명이 기록되어 있고 별유사와 존위는 성만 기록되고 手決이 되어있다. 성명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이정과 감고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1. 이정의 호적중초 본문 등재 현황

하원리 호적중초 36책 가운데 하원리 호적중초 말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정은 모두 35명이다. 원래는 36명이어야 할 것이나 35권의 이정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표는 이정의 성명이 호적중초 본문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표 4> 이정 성명과 본문 등재 여부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1권	1810년	厘正 尹貴泰	본문 등재	
2권	1813년	厘正 金德起	본문 등재	
3권	1816년	厘正 姜大孫	본문 등재	

(다음면에 계속)

6)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6면.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4권	1819년	厘正 高興行	본문 등재	
5권	1822년	厘正 金德起	본문 등재	
6권	1825년	厘正 許 敏	본문 등재	
7권	1828년	厘正 郭道坤	본문 등재	
8권	1837년	厘正 李廷息	본문 등재	
9권	1840년	厘正 郭道仲	본문 등재	
10권	1843년	厘正 池益信	본문 누락 1	
11권	1846년	厘正 池益信	본문 누락 2	
12권	1849년	厘正 尹慶孝	본문 누락 3	14권 본문에 등재
13권	1852년	厘正 池益信	본문 누락 4	14권 본문에 등재
14권	1855년	厘正 尹慶孝	본문 등재	
15권	1858년	厘正 趙井鎭	본문 등재	
16권	1861년	厘正 郭信九	본문 등재	
17권	1867년	厘正 郭中貴	본문 등재	
18권	1870년	厘正 康信祿	본문 등재	
19권	1873년	厘正 姜基太	본문 등재	
20권	1876년	厘正 趙吉仁	본문 등재	
21권	1879년	厘正 池希源	본문 등재	
22권	1882년	厘正 趙吉文	본문 등재	
23권	1885년	厘正 趙吉文	본문 등재	
24권	1888년	厘正 康信祿	본문 등재	
25권	1891년	厘正 林昌國	본문 누락 5	
26권	1894년	厘正 康信祿	본문 등재	
27권	1898년	厘正 玄才千	본문 누락 6	
28권	1899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7	
29권	1901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8	
30권	1902년	厘正 玄才千	본문 누락 9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31권	1903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10	
32권	1904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11	
33권	1905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12	
34권	1906년	厘正 任昌國	본문 누락 13	
35권	1907년	공란	공란	
36권	1908년	厘正 玄才千	본문 누락 14	
계			이정 14명 (전체의 40%) 누락	해당 호적 누락 이정 중 2명은 다른 호적 본문에 등재

이정은 전체 35명 중 21명은 본문에 등재되어 있고, 14명(40%)은 본문에 누락되었다. 현재천은 이정을 세 차례 맡으면서도 호적중초 36책 본문에는 모두 누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창국은 7번 이정을 맡았으나 36책 본문에 한 번도 등재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정을 담당할 당시 해당 호적중초에는 누락되었다가 다음 식년 호적중초에 등재되는 경우가 2명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곧 의도적 누락의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감고의 호적중초 본문 등재 현황

하원리 호적중초 36책 중에 감고는 총 3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감고의 성명이 호적중초 본문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표 5> 감고 성명과 본문 등재 여부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1권	1810년	監考 張漢濟	본문 누락 1	
2권	1813년	監考 池漢仁	본문 등재	
3권	1816년	監考 趙廷璠	본문 등재	
4권	1819년	監考 金德起	본문 등재	

(다음면에 계속)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5권	1822년	監考 姜致謙	본문 등재	
6권	1825년	監考 姜致弘	본문 등재	
7권	1828년	監考 高興大	본문 등재	
8권	1837년	監考 元才弘	본문 누락 2	
9권	1840년	監考 元才弘	본문 누락 3	
10권	1843년	監考 元才弘	본문 누락 4	
11권	1846년	監考 趙東六	본문 누락 5	12권 본문에 등재
12권	1849년	監考 趙東六	본문 등재	
13권	1852년	監考 姜用海	본문 등재	
14권	1855년	監考 趙東六	본문 등재	
15권	1858년	監考 趙東六	본문 등재	
16권	1861년	監考 姜榮洽	본문 등재	
17권	1867년	監考 姜致祿	본문 등재	
18권	1870년	監考 姜榮洽	본문 등재	
19권	1873년	監考 趙斗鎭	본문 등재	
20권	1876년	監考 池益煥	본문 등재	
21권	1879년	監考 康信祿	본문 등재	
22권	1882년	監考 康信祿	본문 등재	
23권	1885년	監考 趙斗鎭	본문 등재	
24권	1888년	監考 趙吉文	본문 등재	
25권	1891년	監考 池昌昆	본문 누락 6	
26권	1894년	監考 尹致元	본문 등재	
27권	1898년	監考 康信祿	본문 등재	
28권	1899년	監考 康命官	본문 누락 7	27권 본문에 등재
29권	1901년	監考 李才權	본문 누락 8	
30권	1902년	監考 姜永伯	본문 누락 9	27권 본문에 등재
31권	1903년	監考 趙吉義	본문 등재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연도	성명	본문 등재 여부	비고
32권	1904년	監考 林世根	본문 누락 10	27권 본문에 등재
33권	1905년	監考 池昌洽	본문 등재	
34권	1906년	監考 尹平權	본문 누락 11	27권 본문에 등재
35권	1907년	監考 金敬準	본문 누락 12	
36권	1908년	監考 金敬準	본문 누락 13	
계			감고 13명 (전체의 36%) 누락	해당 호적 누락 감고 중 5명은 다른 호적 본문에 등재

감고는 전체 36명 중 13명(36%)이 본문에 누락되고 있다. 그러나 감고를 맡은 해당 호적에는 누락되거나 다른 호적중초에 등재되고 있는 경우가 5명이다. 이 경우도 이정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적 누락의 증거라 할 수 있다.

### 3. 이정과 감고의 호적중초 본문 누락

다음의 표는 하원리 호적중초 36책의 이정과 감고 등재 현황이다. 이정은 14명, 감고는 13명 누락이며 이정과 감고 모두 누락된 경우는 9개 호적중초이다.

<표 6> 하원리 호적중초의 이정과 감고 등재 현황

호적명	연도	본문 등재 상황		비고
		이정	감고	
1권	1810년	등재	감고 본문 누락 1	
2권	1813년	등재	등재	
3권	1816년	등재	등재	
4권	1819년	등재	등재	
5권	1822년	등재	등재	
6권	1825년	등재	등재	
7권	1828년	등재	등재	

(다음면에 계속)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호적명	연도	본문 등재 상황		비고
		이정	감고	
7권	1828년	등재	등재	
8권	1837년	등재	감고 본문 누락 2	
9권	1840년	등재	감고 본문 누락 3	
10권	1843년	이정 본문 누락 1	감고 본문 누락 4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1
11권	1846년	이정 본문 누락 2	감고 본문 누락 5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2
12권	1849년	이정 본문 누락 3	등재	
13권	1852년	이정 본문 누락 4	등재	
14권	1855년	등재	등재	
15권	1858년	등재	등재	
16권	1861년	등재	등재	
17권	1867년	등재	등재	
18권	1870년	등재	등재	
19권	1873년	등재	등재	
20권	1876년	등재	등재	
21권	1879년	등재	등재	
22권	1882년	등재	등재	
23권	1885년	등재	등재	
24권	1888년	등재	등재	
25권	1891년	이정 본문 누락 5	감고 본문 누락 6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3
26권	1894년	등재	등재	
27권	1898년	이정 본문 누락 6	등재	
28권	1899년	이정 본문 누락 7	감고 본문 누락 7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4
29권	1901년	이정 본문 누락 8	감고 본문 누락 8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5
30권	1902년	이정 본문 누락 9	감고 본문 누락 9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6
31권	1903년	이정 본문 누락 10	등재	
32권	1904년	이정 본문 누락 11	감고 본문 누락 10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7

(다음면에 계속)

호적명	연도	본문 등재 상황		비고
		이정	감고	
33권	1905년	이정 본문 누락 12	등재	
34권	1906년	이정 본문 누락 13	감고 본문 누락 11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8
35권	1907년	공란	감고 본문 누락 12	
36권	1908년	이정 본문 누락 14	감고 본문 누락 13	이정 감고 둘 다 누락 9
계		이정 누락 =14명	감고 누락 =13명	이정 감고 모두 누락 = 9개 호적중초
		40%	36%	25%

하원리 호적중초에 이정이 본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35개 호적중초 중<sup>7)</sup> 14개 호적중초 14명에 이른다. 감고가 본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13개 호적중초의 13명이다. 게다가 이정과 감고가 한꺼번에 모두 누락된 경우는 9개의 호적중초로 나타났다. 이정은 전체의 40%가 누락되고 감고는 36%가 누락되는 현상을 보였다. 게다가 이정 감고가 한꺼번에 모두 본문에 누락된 호적중초는 9개로 25%에 이른다.

이정과 감고의 등재 통계를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 7> 하원리 호적중초의 이정과 감고 등재 통계

직위		구분	수	백분율
이정	35명	등재	21명	60%
		누락	14명	40%
감고	36명	등재	23명	64%
		누락	13명	36%

호적작성의 담당 책임자인 이정의 40% 누락과 감고 36%의 누락은 의도적이며 관계적인 누락의 증거라 할 정도의 빈도라 할 수 있다.

7) 하원리 호적중초 35권의 이정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정은 35개 호적중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이정과 감고의 등재 현황만을 통해서도 하원리 호적중초가 하원리 인구 모두를 등재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들이 호적 작성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관례적이고 의도적으로 누락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원리 호적중초에 하원리의 모든 인구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IV.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과 戊戌式(1898년)의 남정 등재 현황

제주도 하원리 호적중초 36책의 각 식년의 원호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니 하원리 호적중초 26권 甲午式(1894년)과 27권 戊戌式(1898년) 사이에 원호의 증가가 84.4%, 인구는 7.7% 증가가 나타나 인구변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조사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폭이면 누락되고 새로 등재되는 인명의 증감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 대상은 남자로 국한하였다. 호적중초 상에 남자는 성명과 가족관계가 기재되어 있어서 신원확인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본고에서 사용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하려고 한다. ‘누락’은 26권에 등재되어 있다가 27권에는 등재가 안 된 경우, ‘재등재’는 26권에도 등재 되고 27권에도 등재 된 경우, ‘신등재’는 26권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27권에 새롭게 등재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 1. 호적중초 상의 통계 기록과 실제 기록

호적중초의 말미에는 원호·작통·도인구·남정·여정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해당 식년의 인구는 이것을 토대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호적중초 본문의 남자 성명을 정리해 보았더니 호적중초 말미의 통계 기록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호적중초 상의 통계기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26권(1894년)의 작통은 13통 4호, 원호는 64호, 도인구 466명, 남정 212명, 여정 254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7권(1898년)의 작통은 11통 8호, 원호는 118호, 도인구 502명, 남정 229명, 여정 27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호적중초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하니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 표는 호적중초 말미의 통계 기록과 필자가 직접 확인한 숫자의 차이를 밝힌 것이다.

<표 8> 호적중초 상의 통계 기록과 실제 기록 비교

호적명		26권(1894년)	27권(1898년)	증가현황(4년간)	
작통	작통 기록	13통 4호	11통 8호	2통 감소	15% 감소
	작통 실제	13통 5호	13통 1호	통수 변화 없음	0%
원호	원호 기록	64호	118호	54호 증가	84% 증가
	원호 실제	65호	121호	56호 증가	86% 증가
남정	남정 기록	212명	229명	17명 증가	8% 증가
	남정 실제	203명	227명	24명 증가	12% 증가

우선 작통을 보면 하원리 호적중초 26권의 통계 기록은 13통 4호이나 실제 기록은 13통 5호이다. 27권의 기록은 11통 8호이나 실제 기록은 13통 1호이다. 호적중초 상의 통계기록은 26권과 27권에서 2통이 감소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기록을 조사한 바로는 통수는 변화가 없다. 원호는 26권에 64호, 27권에 118호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65호와 121호였다. 26권에서 56호가 증가하였다. 남정은 26권에 212명, 27권에 229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3명과 227명<sup>8)</sup>으로 26권에서 27권 사이에 24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상의 남정과 실제 남정의 수 또한 다르다. 26권에는 212명

8) 호적중초 27권에 남자 성명이 기록된 것은 232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두 번 기록되었음이 조사되어 27권의 남정은 227명으로 정리하였다.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호에 한 번은 호주로 한 번은 동거인으로 등재되며 인적 사항을 비교해 본 결과 父가 일치하는 등으로 동일인임이 확인되었다. 강기백, 김문중, 김치황, 오규엽, 오영수의 경우이다. 이들이 두 번 기록되는 것은 1896년의 호구조사세칙에 의해 분호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는 호적 통계 기록과 달리 실제 인명이 기록된 사람이 203명으로 9명이 덜 등재되어 있다. 27권에는 229명이라고 통계 기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인명은 227명이 기록되어 2명이 모자라다.

## 2. 원호 등재 현황

누락 호는 가계 구성원 전부가 누락되어 27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재등재 호는 26권에 있던 호의 구성원을 그대로 이어 받는 호이며 호주의 변동이 있는 호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 1) 26권(甲午式, 1894년)의 누락 호와 재등재 호

26권의 원호는 65호인데 이 중 누락 호는 4호, 재등재 호는 61호이다. 26권의 94%가 27권에 재등재되고 있다.

<표 9> 누락 호·재등재 호

호적명	호수	27권에 누락 / 등재 여부					
		누락 호	4호	6%	가계 누락	4호	6%
26권	65호	재등재 호	61호	94%	동일호	54호	83%
					호주 승계	6호	9%
					호주 교체 <sup>9)</sup>	1호	2%

26권과 27권 사이의 호 수의 변동을 조사해 봤더니 26권의 65호 가운데 4호가 누락되어 27권에 나타나지 않는다. 가계 구성원 모두가 누락된 호가 4호이다. 재등재 호는 61호이다. 그러나 표에서 보듯이 재등재 호 61호는 26권의 61호가 27권에 그대로 재등재되는 것이 아니다. 27권에 재등재되는 26권의 호와 동일한 호는 54호였다. 호는 재등재 되지만 동거인이 호주를 승계한 가계가 6

9) 이 경우는 26권에서 여자가 호주였다가 27권에서 남편이 새로 호주로 등재되는 경우이다. 호주 승계는 원래 있던 동거인이 호주로 가는 경우이고, 이 경우는 누락되었던 사람이 호주로 나타난 경우라서 호주 교체로 구분하였다.

호 있었고, 여자 호주에서 남편이 신호주로 교체되는 1호가 있었다.

2) 27권(戊戌式, 1898년)의 재등재 호와 신등재 호

26권의 65호는 27권에서 121호로 증가하였다. 121호는 26권에 있던 호가 재등재되는 61호, 신등재 호가 60호로 27권의 반은 재등재 호 받은 신등재 호이다. 신등재 호는 ① 기존 호는 존속하고, 기존 호의 동거인이 분호하여 호주로 등재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호(34호)와 ② 26권에 등재 되지 않았던 인명이 새로 호를 구성하며 등재되는 호(26호)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재등재 호 · 신등재 호

호적명	호수	27권에 등재 여부					비고
27권	121호	재등재	61호 (51%)	동일호	54호	45%	26권과 동일 호
				호주 승계	6호	5%	
				호주 교체	1호	1%	
		신등재	60호 (49%)	분호	34호	28%	26권의 동거인이 호주로 분호
신등재	26호			21%	새로 나타난 인명		

27권의 신등재 호는 121호 중 60호로 49%이다. 신등재 호를 다시 구분하면 26권에서는 동거인이었다가 호주로 분호한 경우가 34호로 전체의 28%이고 26권에 없던 새로운 인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호가 26호로 전체의 21%이다.

3. 남정 등재 현황

1) 남정의 누락과 등재 수

26권의 203명의 남정, 27권의 227명의 남정의 성명 등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11> 누락 남정 · 등재 남정

호적명	남정	재등재	누락	신등재	비고
26권	203명	158명	45명		등재되었다가 누락(45명)되거나, 누락되었다가 신등재(69명)되는 인명의 총 수는 114명
		78%	22%		
27권	227명	158명		69명	
		70%		30%	

26권의 남정 203명 중 158명만 27권에 재등재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45명은 27권에 등재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또한 27권의 남정 227명은 26권에 등재되었던 158명과 26권에 등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명 69명이다. 무려 114명에 이르는 남정의 누락과 신등재 현상이 포착되었다. 26권의 22%의 남정이 27권에 누락되고, 27권의 30%의 남정이 신등재되었다. 27권에는 70%의 남정만이 26권에서 온 남정이다. 한 식년 사이 호적을 통하여 22%의 남정이 누락되고 30%의 남정이 신등재되는 현상은 호적등재 원칙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본 연구는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이라던 ‘無一漏戶 無一漏名’ 원칙이 상당히 위배되고 있는 점을 찾아낸 것이라 할 것이다.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도 조선시대 호적 작성 원칙과 마찬가지로 漏戶와 漏口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2) 남정 등재 실태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영인본의 「해제」는 하원리 호적중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원리 호적중초에는 호적대장에 기입되지 않는 3세 미만의 남녀의 출생과 사망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 그 외에도 하원리의 移來와 移去, 더부살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도망 혹은 표류자에 대한 자세한 상황 등 인구의 이동 및 변동사항들을 기록하여 실제의 인구, 거주 상황 및 변동 상황을 자세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sup>10)</sup>

하원리 호적중초는 3세 미만의 남녀의 출생과 사망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고, 하원리의 移來와 移去, 더부살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도망 혹은 표류자에 대한 자세한 상황 등의 인구의 이동 및 실제의 인구, 거주 상황 등의 변동사항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 남정의 성명을 추적했더니 114명(의도적 누락 103명)의 누락과 신등재 현상이 포착되어 이제 기존연구에서 '실제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114명으로 파악된 누락과 신등재된 남정들의 등재 실태에 대해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누락인 경우 26권에 등재되었던 호는 존속하여 다른 가족은 계속 등재되고 있고 혼자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등재인 경우 26권에서 27권으로 아버지를 추적해 봤더니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26권에 없다가 27권에서 혼자 새로 나타나는 남자도 있었다. 그리고 26권에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가 27권에 나타나는 신등재 경우도 있다.

누락되는 남정의 누락 이유와 등재 자격별로 호주에서 누락되는지 동거인에서 누락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어서 신등재 남정의 경우에도 등재 이유와 등재 자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누락 남정

호적 작성에서 누락할 수 있는 이유로는 ① 사망 ② 이주 ③ 도망 ④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볼 수 있다. 26권에 등재되어 있다가 27권에 누락되는 인명 45명 중 5명은 사망으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나머지 40명은 이주, 도망 혹은 의도적 누락일 것이다. 45명 가운데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5명으로 장자 혹은 아우가 호주를 승계하는 점으로 사망으로 추정하였다. 이주해 갔을 경우와 도망간 경우도 그 사항을 기록하는 다른 권에 비해 26권과 27권에 이주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6면.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12> 누락 이유

누락 남정	누락 이유				
45명	사망 추정	5명	1명	81세	長子 호 승계
			2명	78세	長子 호 승계
			1명	77세	長子 호 승계
			1명	61세	弟 호 승계
	이주 기록	0명			
	도망 기록	0명			
	의도적 누락 추정	40명			

누락된 남정의 등재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13> 누락 남정의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여부)

누락 남정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여부)			
45명	호주	10명	호주만 누락	6명
			가계 누락	4명
	동거인	35명	동거인만 누락	31명
			가계 누락	4명

45명의 누락 남정은 26권에서 호주였다가 누락된 경우가 10명이다. 호주만 누락된 경우 6명과 가계 구성원 모두가 누락되는 4명을 포함해 10명이다. 26권에서 동거인이었다가 누락된 남정은 35명이다. 동거인만 누락된 경우 31명과 가계가 누락하는 경우 4명이다. 한 가계의 남정이 다 누락되는 경우 8명은 호주였다가 함께 누락되는 4명과 동거인이었으면서 가계가 함께 누락하는 4명이다.

(2) 신등재 남정

27권에 새로 등재되는 이유로는 ① 출생 ② 이주 ③ 의도적 누락인 경우라고 추정된다. 26권은 1894년 27권은 1898년이므로 5세 미만의 성명은 27권에

서 출생으로 인해 새로 등재한 인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호적 작성에서 나이를 낮추어 등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년까지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26권과 27권만 비교해서 출생으로 추정하였다.

<표 14> 신등재 이유

신등재 남성	신등재 이유	
69명	출생 추정(5세 미만)	6명
	이주 기록	0명
	의도적 누락 추정	63명

27권에 신등재되는 남성은 69명이다. 5세 미만의 6명은 그 사이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주로 기록된 사람은 없어서 63명은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가 신등재한 것으로 보았다.

새로 등재되는 인명의 등재 자격 중에 새로운 호주로 등재되면 이주해 왔거나 실제 분호하여 살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가 등재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존 호에 동거인으로 신등재되면 26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던 인명일 것으로 생각하였다.

<표 15> 신등재 남성의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신등재 남성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여부)			
	호주	26명		
69명	동거인	43명	5세 이상 동거인	37명
			5세 미만 출생자	6명

신등재 남성 69명 중 호주로 신등재되는 경우는 26명, 동거인으로 신등재되는 경우는 43명(5세 미만 출생자 6명+5세 이상 37명)이다.

누락 이유만 살펴보면 의도적인 누락으로 보이는 남성은 26권에 40명(전체 남성의 20%), 27권에 63명(전체 남성의 28%)으로 파악하였다.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16> 의도적 누락

호적명	남정	구분	인원	비율	누락 이유	인원	비율
26권	203명	누락	45명	22%	사망 추정	5명	2%
					의도적 누락	40명	20%
27권	227명	신등재	69명	30%	출생 추정	6명	3%
					의도적 누락	63명	28%

(3)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26권의 남정 203명 중 호주는 64명, 동거인 139명이다. 호주 64명 중 54명은 재등재, 누락 10명이다. 동거인 139명 중 재등재는 104명, 누락 35명이다.

27권의 호주는 121명 동거인 106명이다. 호주 121명 중 재등재는 95명 신등재 26명이다. 동거인 106명 중 재등재는 63명 신등재는 43명이다. 다음 표는 26권과 27권 남정 전체의 등재 자격별 등재 상황이다.

<표 17> 등재 자격별(호주 / 동거인) 등재 상황

호적명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등재 상황			
	남정 203명	호주 64명 <sup>11)</sup>	동거인 139명	재등재	54명		
26권				남정 203명	호주 64명 <sup>11)</sup>	동거인 139명	누락
			누락				5명
	동거인	139명	재등재	104명	동거인 → 호주	41명	
			누락		동거 → 동거	63명	
27권	남정 227명	호주 121명	동거인 106명	재등재	95명	호주 → 호주	54명
						동거인 → 호주	41명
	신등재		26명				
	재등재	63명	동거 → 동거	63명			
	신등재	43명	출생	6명			
			신등재	37명			

11) 26권의 호주는 65명이나 여자 호주가 1명이 있다. 남정의 수로 표를 만들어 여자 호주 1명을 제외하였다.

이를 등재 상황별로 다시 구분하여 살펴도록 하겠다. 우선 재등재 남정의 등재 자격인 호주, 동거인 여부를 정리하였다. 재등재된 158명 중 호주에서 호주로 재등재된 남정은 54명, 동거인이었다가 호주로 재등재된 남정은 41명인데 호주를 승계한 사람은 7명이고 분호하여 새로운 호를 구성한 사람은 34명, 동거인에서 동거인으로 재등재된 남정은 63명이다.

<표 18> 등재 자격별(호주 / 동거인) 재등재 상황

등재 여부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재등재 이유	
재등재	158명	호주 → 호주	54명		
		동거인 → 호주	41명	호주 승계	7명
				분호	34명
	동거 → 동거	63명			

누락 남정의 등재 자격인 호주, 동거인 여부를 살펴보면 누락 남정은 45명 중 호주였다 누락된 사람은 10명인데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5명이다. 동거인이었다가 누락된 사람은 35명이다.

<표 19> 등재 자격별(호주 / 동거인) 누락 상황

등재 여부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누락 이유	
누락	45명	호주	10명	사망 추정	5명
		동거인	35명	누락	5명

다음은 신등재 남정의 등재 자격인 호주, 동거인 여부를 살펴보면 신등재 남정은 69명 중 호주로 새로 등재되는 남정은 26명, 동거인으로 신등재되는 남정은 43명인데 출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6명이다.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표 20> 등재 자격별(호주 / 동거인) 신등재 상황

등재 여부		등재 자격(호주 / 동거인)		신등재 이유	
신등재	69명	호주	26명		
		동거인	43명	출생	6명
				신등재	37명

41명의 6명은 호주가 변동되고 35명은 기존 호와 별도로 분호되어 새로 호주가 된 경우이다.

26권의 203명의 남정 중에서 45명은 누락되었다. 그리고 27권의 227명의 남정 중에서 69명은 신등재된 인명이다. 누락 남정 중 5명은 사망으로 추정되고, 신등재 남정 중 6명은 출생으로 추정된다. 두 식년의 호적중초에서만 114명의 누락과 신등재 현상이 포착되었고 이 중 103명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던 인명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호적중초에 등재된 실제 성명을 통하여 이정과 감고의 본문 등재 여부와 남정의 등재 여부를 살폈다. 이정은 40% 감고는 36%가 해당 호적의 본문은 물론 하원리 전체 호적 본문에 등재되지 않고 있었다. 남정 중에는 103명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26권에서 40명(전체 남정의 20%), 27권에 63명(전체 남정의 28%)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정과 감고의 본문 누락 현상과 103명 남정의 누락은 의도적이고 관례적인 누락을 증명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써 제주도 호적작성 원칙은 ‘無一漏戶 無一漏名’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하원리 호적중초 甲午式(1894년)과 戊戌式(1898년)을 표본으로 남정의 누락과 등재 현상을 통해 제주도 호적작성도 관법을 따랐음을 실제 등재 인명을 통해 살폈다. 제주도 호적 작성의 원칙은 1872년 도두리 「籍草紙本錢設置節目」을 근거로 ‘無一漏戶 無一漏名’의 철저한 호구조사가 시행되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호적작성에서도 漏戶와 漏口가 빈번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우선 호적 작성 책임자인 이정과 감고의 호적 등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의 누락을 밝힐 수 있었다. 하원리 호적중초 36책을 통틀어서 살핀 결과 이정은 40%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고 감고는 36%의 본문 누락이 드러났다. 이 정도의 빈도는 의도적이고 관례적으로 누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겠다.

통계 기록으로 보면 甲午式(1894년)과 戊戌式(1898년) 사이에 원호는 65호에서 121호로 56호 86% 증가, 남정은 203명에서 227명으로 24명 12% 증가하였다. 그러나 남정의 실명을 확인하여 누락과 등재 현상을 살폈더니, 甲午式(1894년)에서는 전체 남정의 22%인 45명이 누락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戊戌式(1898년)에 신등재되는 남자는 전체 남정의 30%인 69명이나 되었다. 두 개 식년 호적중초 사이에서만 총 114명의 이탈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사망 추정 5명과 출생 추정 6명으로 모두 103명의 의도적 누락 현상이 나타났다. 두 개 식년 사이에 남정의 22% 누락과 30%의 신등재 현상이 드러난 이상 제주도의 호적작성 원칙이 ‘無一漏戶 無一漏名’을 지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두 식년의 호적중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식년을 대상으로 하여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또한 호적법의 변동이 적용되는 전후 호적중초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누락 인명이 더 많이 드러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03명의 누락과 신등재라는 다수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실태라고 보인다. 이러한 현

제주도 호적 작성 원칙 “無一漏戶 無一漏名”에 대한 고찰

상을 통해 제주도 호적작성의 원칙도 漏戶와 漏口를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호적작성 원칙도 ‘無一漏戶 無一漏口’였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처럼 제주도 호적작성의 원칙도 ‘無一漏戶 無一漏名’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임을 실제 등재 인명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투고일: 2013.4.1

심사일: 2013.5.22

게재확정일: 2013.5.28

• 참고문헌

1. 자료

- 『하원리 호적 중초』 1권~36권(1810년~1908년), 하원리 마을회관 소장 촬영 파일
-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주하원리 호적중초』 1·2(영인본), 서울경인인쇄협동조합, 1992

2. 저서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3. 논문

-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39, 대동문화연구원, 2001
- 김동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 김동진 외, 「19세기 제주 지역의 신분구조와 직역의 사회적 의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 대정현 『호적중초』의 기초적 연구」, 『역사민속학』 19, 민속원, 2004
- \_\_\_\_\_, 「『호적중초』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정현의 호구와 그 변동」, 『동서사학』 6·7, 2000
- 손병규,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파악—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4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戶)’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_\_\_\_\_,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 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1

## Study on the Principle of Family Registration in Jeju-do

### — Different View on the Principle of no Omission in the Family Register

Han, Geum-soon

Meanwhile, the census in Jeju-do was known to be conducted under thorough principle that does not allow any omission of one person or household in the family register. However, with confirming the name of adults on factual registration in detail, this study figures out intentional omission of person as well as household in the family register. Additionally, this kind of intentional omission was frequently taken place in Jeju-d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henomenon of omitting household and person based on the 26<sup>th</sup> volume(1894) and the 27<sup>th</sup> volume(1898) of data for the family registration in Hawon-ri, with setting up the year of 1896 as time criterion when ‘*bylaw for census taking* (detailed legislation for census taking)’ started to be applied.

Above all, this study searches for the name of ‘Lee Jeong’ (officer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 and ‘Gam Go’ (secondary officer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 in the body of family register. Considering their condition of omission and registration in total volumes of family register, the name of ‘Lee Jeong’ was omitted in 40% of total volumes and the name of ‘Gam Go’ was omitted in 36% of total volumes. Even though Lee Jeong and Gam Go were clearly stated as official position in charge of family registration in the end of family register, their names were frequently omitted for purpose. The frequency of omission in family register proves the fact that this kind of omission in family register was conducted intentionally and conventionally.

Furthermore, this study observes the phenomenon of omission and registration in two family register, with grasping autonomy of adults in the body of these family register. 45 people, 22% of the whole adults who were

registered in the 26th volume, were omitted in the 27th volume. In addition, 69 men, 30% of the whole adults who were not registered in the 26th volume, were newly registered in the 27th volume. Therefore, the total cases amounts to 114 people who were intentionally omitted or registered in two volumes of data for the family registration. Consequently, the principle of the family registration in Jeju-do was impractical not to allow any omission of one person or household. Therefore, intentional omission of person and household in the family register was frequently conducted in Jeju-do like any other region.



Key Words : the principle that does not allow any omission of one person or household in the family register, omitted household, omitted person, the principle of family registration, data for the family registration in Hawon-ri, officer in charge family registration, total number of household